[별표 제2호] 중장년 인턴십(풀타임) 직무별 근로조건 확인서

|  |
| --- |
| **중장년 인턴십(풀타임) 직무별 근로조건 확인서** |

**※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등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참여기업이 작성하여 신청시 업로드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기 업 명** | (신청기업명 기재) |

※ 직무별 신청인원에 맞춰 하단의 양식을 추가하여 기재 가능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직 무 명** |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입력한 직무명과  동일하게 입력 | **희망인원** | 명 |
| **업무내용** |  | | |
| **인턴 소속 및 직책** |  | | |
| **근로계약기간** | **□ 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 기간의 정함이 있음 (2024. . . ~ . .)** | | |
| **근로시간** | **시 분부터 시 분까지**  **(휴게시간: 시 분부터 시 분까지, 주 시간 근로)** | | |
| **임금** | **월 원** | | |
| **- 약정임금 구성 항목:**  **- 기본급 원, ○○○ 원, ○○○ 원**  **- 임금 계산 기간: 매월 일부터 일까지**  **- 임금 지급일: 매월 일** | | |
| ※ (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) 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∙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  ∙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무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∙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이금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| | | |
|  | | | |

[별표 제3호] 중장년 인턴십(풀타임) 참가 관련 확인서(참여기업용)

|  |  |
| --- | --- |
| **중장년 인턴십(풀타임) 참가 관련 확인서(참여기업용)** | (앞면) |

※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등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참여기업이 작성하여 신청시 업로드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사업장명** |  | **대표자성명** |  | | | **사업자등록번호** |  | **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** |  | | | **소재지** |  | | | | |  | | | | | | **확인사항(뒷면 포함)** | | | | **사업주 확인**  **(○, ×)** | | ➀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며, 상시근로자수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) 5인 이상에 해당함 | | | |  | | ➁ 안내서 상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(뒷면) | | | |  | | ③ 3년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음 | | | |  | | ④ 임금체불 등 인턴협약을 계속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중장년 인턴십 내에 연계제외되며, 인턴채용지원금이 기업에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| | | |  | | ⑤ 실시기업이 인턴채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,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신청(수령),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| | | |  | | 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일자리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의 인턴 일자리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받았음 | | | |  | | ⑦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중장년 인턴십(풀타임) 연계와 관련한 모니터링(유선 또는 현장방문) 및 서류 확인 요청 시 상시근로자수, 임금지급대장, 출근 기록부 확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| | | |  |   상기 사업장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인턴십(풀타임)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‘확인사항’을 숙지하고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하며, 동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.  **20 년 월 일**  신청인：기 업 명 대표자 (인 또는 서명)  **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** |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 |  |  | (뒷면) |
| **○ 제외 대상 사업장**  1. 기업체(사업장)이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닌 기업, 사업장(근무지)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 기업  2.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4대 보험 미가입 기업  3. 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4. 인턴 채용 희망 직무를 단순 혹은 노동집약적 근무 신청한 업체  5. 인턴의 직무가 단순 혹은 노동집약적인 기업  6. 소비·향락업체\*, 근로자파견업체\*\* 및 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\*\*\*)  \* 소비·향락업체: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, 위생관리법 제2조,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,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(부동산업, 일반 유흥주점업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여업, 복권발행업 등)  \*\*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\*\*\* 소속 근무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(파견 근로자 포함)시키는 경우 포함  7. 파견직 근로자(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  8.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,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9.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,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(예: 학습지 교사, 방과후 교사)  10.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숙박업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,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)  11.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)  12.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 ※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 13. 인턴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14.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\*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인턴 근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15.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  16.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사업체  17. 기타 세부사업 별 특별히 정하는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,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  18. 재단에서 주의·경고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| | | | | |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기업(개인·신용)정보 수집·처리 동의서(참여기업용)** | | | | |
|  |  |  |  |  |
| **※ 기업(개인·신용)정보 수집·처리 동의서로 기업 별도 제출** | | | | |

[별표 제4호]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처리 동의서(참여기업용)

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(신용)정보를 수집 및 처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제공받는 자** |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|
| **제공받는 자의**  **이용 목적** | 중장년 인턴십 참여기업 선정, 관리, 지원금 지급 |
| **제공하는**  **기업(신용)**  **정보의 내용** | 기업명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지, 연락처, 홈페이지,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및 업태, 전담 관리자 성명, 전담 관리자 연락처, 인력현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현황(가입내역, 가입상태, 가입자 수, 취득일 등)  재무제표에 포함된 내용(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부채 등), 기업 계좌번호, 참여자 임금 입출금내역 |
| **제공받는**  **자의 정보**  **보유 기간**  **및 이용 기간** | 3년 |
| **동의를**  **거부할 권리 및**  **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** | 위 기업(신용)정보에 관한 위 사항들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|

**∙ 기업(신용)정보의 수집·처리에 관한 사항**

|  |
| --- |
| 「기업(신용)정보 수집 및 이용」에 관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기업(신용)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 **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** |

**20 년 월 일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기업명:** |  |
| **대표자:** | **(인 또는 서명)** |

**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**